

제 8 장 주민생활 지원

제 1 절 금정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제 2 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 3 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제 4 절 의료급여

제 5 절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

제1절 금정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추진배경》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03.7.30)으로 區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06년부터 매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매년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

-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여건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분야별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민 중심의 복지구현을 위한 비전제시
-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구민의 복지욕구 및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활용, 우리구 특성에 맞는 목표 및 추진계획을 제시
- 부문별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별 수요 파악 및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방안 마련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가. 수립시기 : 4년마다 수립,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

- 1기(2007년~2010년) / 2기(2011년~2014년)

나. 2011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추진 실적

1. 저소득층 복지 및 자활분야

- 맞춤형 고용창출을 위한 구 취업지원센터를 5층에서 1층 민원실로 이동하여 취업상담사(1명)가 구인·구직 상담을 실시하는 등, 구인구직한 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일자리 발굴 및 업체발굴 등 총 3,578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일자리와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인 사회적기업 8개

소에 대한 지원으로 희망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음

-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16건 용자 및 생업자금 5건을 추천하였고, 주거안정을 위하여 LH, 부산도시공사에 예비입주자 1,010세대 추천하였음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을 신속 발굴하여 204명에 대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사랑의 열매 지원사업으로 153명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 및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는 전문요원(3명)의 방문상담(714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후원자에게는 나눔의 기쁨을, 수혜자에게는 이웃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행복금정 천사구좌 후원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후원자를 307명 발굴하여 수혜자 300명에게 1인당 3만원~15만원씩 지원하여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2. 노인복지 분야

- 관내 독거노인 6,664명('10년12월기준) 실태조사에 따라 요보호 독거노인 대상자 527명을 선정하고 노인돌보미를 통하여 안전망을 구축,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고 신규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였으며
- 어르신 119명의 욕구조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밑반찬, 이미용, 가사, 집수리, 집청소, 후원, 결연 등)를 지원하였음
-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은 비예산이었으나, 1.4백만원을 확보하여 만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1개를 운영하였고,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 발대식을 가져 100% 실적을 달성하였음

-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은 당초 240백만원, 53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594명에게 지원하는 실적을 수행하여 100% 실적 달성함
-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 319백만원, 개보수 12개소,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122개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개수를 계획하였으나, 330백만원, 개보수 19개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121개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개수가 36개를 운영하였음
- 노인복지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연 2회 회의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실적을 100% 달성하였음

3. 장애인복지 분야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욕구실태조사,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연금 등 지급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체육 활동 지원 및 정보화 교육 지원 등을 성공적 추진으로 장애인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

4.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 아동발달계좌 지원 및 홍보 : 월평균 363명, 예산집행 110백만원 집행
-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 연평균 2,215명, 예산집행 629백만원 집행
- 필수연계기관(경찰서,교육청 등)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구성·운영 되었으며, 위기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사항 관련 협의 등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위기 청소년의 범죄노출 등 2차 피해 예방 등의 적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음

5. 여성·보육복지 분야

- 평가인증 미참여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참여 독려 정책으로 2011년도 신규 평가인증 6개소, 재인증 통과 14개소 어린이집의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 122개소 중 81개소가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인증되었음
- 무료급식소 주5일 운영, 여성 합창단 육성,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지원 강화하였음

6. 보건의료복지 연계분야

- 금정구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사례관리, 학교 및 유관기관의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사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실적에 있어서는 대부분 초과달성을 하는 등 적절한 서비스가 이뤄졌다고 판단됨
- 사례관리, 교육, 의료비 지원 등의 대부분의 사업이 금정구 및 인근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 제공되어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입지를 넓힘

7. 사업기반조성 분야

-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등 심의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를 6회(서면2회, 회의4회) 개최하였으며, 서비스연계(사례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회의도 3회 개최하였음

다. 2012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 7개부문 60개사업

부 문 별	사 업 명	예산 (백만원)	추진계획
기초생활 보장	행복금정 천사구좌 후원 사업 추진	0	후원자 발굴 250명, 수혜자 250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0	방문전화 상담 4,927가구 이동 복지상담실 운영 2회
	취업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20	일자리 50개 창출, 취업연계 200건
	저소득층 고용안정 지원	0	자활공동체 운영(참여자 10명)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취업연계 30명)
	용자사업 지원 및 홍보 강화	150	생활안정자금 지원 15명 생업자금 용자추천 5명
	주거안정 지원	0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 연계 300세대 전세보증금 용자추천 30건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실화	473	긴급복지지원 200명 사랑의 열매지원 120명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63	정부양곡 할인지원 200세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903	사업장 발굴 2
	자활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70	집수리 50가구
	사회적 기업 육성	783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관련 전문 상담봉사원 운영	95	상담봉사원 운영실적 1,200건
	혼자사는 저소득가구 방문보호제 실시	0	방문대상가구 50가구 서비스지원 2,500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0	지원대상자 400명
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네트워크구축	0	간담회 2회
	준고령자를 위한 노후 생활 설계 프로그램	0	육구조사 100명, 벤치마킹 1회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195	서비스제공 530명
	독거노인 24시간 안전네트워크 체계 구축	0	간담회 개최 2회
	장기요양서비스 통합제공 시설 확충	0	사업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2회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원	3.6	우수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활동
	긴급지원 및 무료급식 확대	633	긴급지원 200명 식사배달 등 450명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	339	경로당 시설 개·보수 10개소 운영지원 123개소
	찾아가는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0	이동프로그램 홍보 2회

부 문 별	사 업 명	예산 (백만원)	추진계획
장애인복지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 운영	0	대상자 발굴 30명 신규 프로그램 제공 2개
	장애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0	프로그램 운영 1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0	프로그램 운영 1개
	장애인 복지시설간 네트워크 활성화	0	네트워크 구성
	장애인 이용 문화·체육시설 확보	0	실태조사 200명 신규장소 확보 2개소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3,103	장애인 연금 지원 48,108명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5	장애인 보장구 수리 50건
	장애인 정보화교육 운영지원	5	장애인 정보화 교육 198명
	장애인 생활지원 상담실	0	상담 100건이상
아동·청소년복지	대학생 멘토링 사업 증가	6	멘토링 사업 26명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활동	0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운영 연 4회
	지역아동센터 시간 연장	6	운영시간 연장 지역아동센터 지원 1개소
	아동발달 계좌 지원 및 홍보	102	자산형성 지원 월 356명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739	급식지원 연 2,241명
	복지장학기금 확충	12	장학금 지급 30명
	청소년공부방 운영	34	공부방 운영 2개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300	프로그램 운영 50개
여성·보육복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72	프로그램 150개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지원 강화	759	여성폭력관련 시설 운영 5개소
	어린이집 영아보육도우미 배치 운영	36	영아보육도우미 활동비 지급 6개소
	여성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0	경로식당 운영, 여성합창단 연습, 여성단체회의, 김장나누기

부 문 별	사 업 명	예산 (백만원)	추진계획
여성·보육 복지	보육료 지원 강화	13,380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3,800명
	시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350	시간연장 어린이집 40개소 운영
	장애아동 보육지원 확대	608	장애아동 전담어린이집 1개소 지정
	시설환경 우수어린이집 선정	0	평가인증 취득 5개소
	영유아 다문화 사회 이해증진 프로그램 개발	2	시설장·보육교사 대상 프로그램 운영 4회, 영유아 참여 프로그램 운영 1개
보건의료 복지 연계	아동 및 청소년 사업관련 정신보건 센터 활성화	12	아동·청소년 등록 및 사례관리 1,000명
	관내 노인시설과의 연계확대	0	경로당 방문 순회보건서비스 제공 21개소 50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연계 확대	0	방문등록대상자 연계 2,100건
	의료급여 만성질환자 및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0	의료급수 일수 800일 이상자 관리
	방문건강 관리 연계프로그램 발굴	0	연계프로그램 3개이상 발굴
	노인보건사업 활성화	43	치매상담센터 운영 2,500건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1,000건
	여성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23	임산부 철분제 지원 2,960명 저소득여성 건강검진 600명
	보건복지 네트워크 협력체계 활성화	0	지역협의체 간담회 2회이상 실시
사업기반 조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3.5	회의개최 분기1회 이상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2.8	통합서비스 분과회의 2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0	상시학습 총족률 80%이상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 사업개요

가. 의의 및 특성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나. 도입배경

-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의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
 - ▷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 선택구매
- 서비스 이용료 일부 본인부담으로 수요자 권리의식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 방지
-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

< 기존 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의 차이 >

구 분	기존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지 원 대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요에 기반한 대상자 선정
지 원 방 식	공급자에 대한 지원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서비스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서비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 형성 지원
사 업 방 식	중앙 기획/지방 집행 집중식·하향식(Top-down)	지방 기획/중앙 지원·평가 분권식·상향식(Bottom-up)

다. 사업 유형

- 지역선택형(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전국단위 공급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
- 지역개발형 사업

지역특성·주민 수요 등을 감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는 사업

〈 지역선택형 사업과 지역개발형 사업 비교 〉

구 분	표준형 사업	자체개발형 사업
사업 개발	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역할	사업 선택	사업 개발
제공기관 지정	복지부	지자체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2. 2011년 사업현황 및 실적

가. 사업현황(총 14개 사업)

○ 지역선택형사업 1개 / 시개발형사업 15개 / 구개발형사업 2개

나. 총예산액(876,247천원) ▷ 국비 613,373천원 시비 244,451천원 구비 18,423천원

○ 지역선택형 220,616천원 / 시개발형 532,811천원 / 구개발형 122,820천원

다. 사업내용

○ 지역선택형 사업(국비 70%, 시비 30%)

- 사업명 :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 주요내용 : 취학전 아동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제공
- 수행기관 : 웅진씽크빅, 대교눈높이, 교원 등 9기관

○ 市 개발형 사업(국비 70%, 시비 30%)

① 1·3세대 통합교육 「세대공감 Old & New」

- 주요내용 : 자연체험, 공예체험, 서예, 한문교육, 인성교육
▷ 노인이 가르치고 아동이 학습·체험
- 수행기관 : 금정시니어클럽 등 7개 기관

②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 주요내용 : 부산 해양도시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
해양도시 탐험, 해양역사 탐험
- 수행기관 : 부경대학교 지역사회서비스센터 등 4개 기관

- ③ 근로자들의 근로의욕향상과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EAP
 - 주요내용 : 제조업체근로자의 여가, 체력증진, 문화체험 활동
 - 수행기관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기관
- ④ 급성기 심혈관 질환후 집중관리서비스
 - 주요내용 : 심혈관 중재기술 및 심혈관 수술을 받은 지 3개월 이내 자에게 검사 및 방문 관리
 - 수행기관 : 동아대학교의료원 임상시험센터 등 2개 기관
- ⑤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 주요내용 : 특수 휠체어 렌탈, 맞춤형 포지셔너 등 재활기구 대여
 - 수행기관 : (주)아이앤유케어 부산지점 등 2개 기관
- ⑥ 아동건강 관리서비스
 - 주요내용 : 맞춤형 운동처방 및 지도, 식생활 습관 교정지도
 - 수행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 기관
- ⑦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
 - 주요내용 : 적극적 부모역할 프로그램, 성장지원 프로그램
 - 수행기관 : 부산여자대학교 사회서비스센터 등 8개 기관
- ⑧ Art Therapy를 활용한 지역아동 EQ증진 서비스
 - 주요내용 :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상담 및 미술치료활동에 따른 학교적응력 향상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동서대학교 지역사회서비스센터 등 7개 기관
- ⑨ 성장기 아동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주요내용 : 성장기 아동들에게 기악레슨 및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수행기관 : 고신대학교 지역사회서비스센터 등 6개 기관
- ⑩ 장애아동·청소년 홈티칭 사업
 - 주요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1:1 교과지도 및 일상생활지도 서비스
 - 수행기관 : 신라대 사직사회서비스센터 등 6개 기관
- ⑪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실
 - 주요내용 : 치매예방을 위한 뇌기능 증진 및 건강정서증진 서비스
 - 수행기관 : 부산여자대학 사회서비스센터 등 8개 기관

⑫ 장애인 노인돌봄 여행서비스

- 주요내용 :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장애인 노인 맞춤형 서비스
- 수행기관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기관

⑬ 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 주요내용 : 학부모코칭등 아동 방과후 기초돌봄 서비스
- 수행기관 : 로템 사회서비스센터 등 6개 기관

⑭ 아동발달 검사 서비스

- 주요내용 : 영유아 발달검사를 통한 조기선별 검사 서비스
- 수행기관 : 부산특수치료교육원 등 7개 기관

⑮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 주요내용 : 전문가에 의한 조기중재등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 수행기관 : 사단법인 선민사회복지회 등 7개 기관

○ 區 개발형 사업(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 주요내용 : 놀이·미술·언어·요리치료 등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기관

②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 주요내용 : 체조·댄스·무용 등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개 기관

라. 이용 및 지원실적

○ 서비스 이용 : 총 13,965건

▷ 지역선택형 9,064건 / 시개발형 3,806건 / 구개발형 1,095건

○ 지원실적 : 876,247천원 (국비 613,373천원 시비 244,451천원 구비 18,423천원)

▷ 지역선택형 220,616천원 / 시개발형 532,811천원 / 구개발형 122,820천원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가. 법 제정추진 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나. 제정 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라. 주요내용

-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2) 자활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 자활지원

마. 기초생활보장 업무 처리절차

(1) 신청

- 신청권자 : 보호대상자, 친족 및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금융정보동의서, 소득·재산관계서류 등

(2) 조사

- 조사대상 :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가구원
- 조사내용 :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근로능력 등
-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및 가정방문 현장조사

(3) 보장결정

- 보장의 단위 : 가구를 단위로 보장하되 특히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
- 결정·통지 :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장여부 결정 후 서면통지
-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현황(단위:세대)

계	적합	부적합	보호중지	비고
1,317	543	222	552	

(4) 변동·사후관리

- (변동관리) :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인적사항 등 변동사항 정비
- (사후관리) : 부정·중복수급 예방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바.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실적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원금액(천원)	비 고
국고보조사업		23,011,350	
구	생계급여	4,551가구	17,038,182 수급자
	주거급여	4,329가구	4,028,827 수급자
	교육급여	1,151명	982,938 수급자 중·고 입학금, 수업료
	해산·장제급여	228명	112,045 수급자
분	정부양곡	1,691세대	481,415 수급자, 차상위
	월동대책비	690세대	38,050 수급자, 차상위
	교육장려금	1,144명	329,893 수급자, 차상위 자녀

사.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소 계		소 계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합 계	4,966	8,106	4,812	7,757	154	349
서 1 동	467	754	455	729	12	25
서 2 동	364	593	351	567	13	26
서 3 동	423	678	406	644	17	34
금 사 동	337	550	331	539	6	11
부곡1동	516	860	499	828	17	32
부곡2동	256	413	249	399	7	14
부곡3동	237	382	234	377	3	5
부곡4동	334	513	328	497	6	16
장전1동	194	316	187	299	7	17
장전2동	138	182	138	182		
장전3동	262	410	252	387	10	23
선두구동	113	146	110	142	3	4
청룡노포동	153	244	150	234	3	10
남 산 동	699	1,252	672	1,189	27	63
구서1동	182	334	165	281	17	53
구서2동	257	436	251	420	6	16
금 성 동	34	43	34	43		

아.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제5조)
-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재산의 소득 환산율

구분 \ 종류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 급 권 자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 의무자	재산종류 구분 없이 4.17%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1(월/만원)	53	90	117	143	170	197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6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지원 내 용 〉

구 분	내 용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 급여제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주거급여 (현금·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 도우미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물급여 지급
교육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고등학생 자녀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인 년1회 115.7천원) 단, 2004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는 없고, 부교재비는 34.9천원 지급(연1회) ❖ 학용품비 : 연2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자녀 전원 (1인당 48천원, 학기당 24천원씩 2회)
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1명당 500천원(쌍둥이 500천원 추가)
장제급여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1구당 500천원
의료급여	❖ 전수급자 의료급여1종 ☞ 전액, 의료급여2종 ☞ 85% ~ 90% 지원

〈 예 산 현 황 〉

(단위 : 천원)

계	기초생활 보장급여 (생계비등)	자 활 지 원			
		계	자활근로 사업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실비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28,300,181	23,102,911	2,598,635	2,219,700	5,670	373,265

2. 자활사업

2000.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뿐만 아니라 특례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였다.

가. 선정기준

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도 판정 기준)로서, 근로능력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비 지급이 가능하다.

나. 2011년 자활사업 내용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주요사업 내용별)	실시방법	인원(명)					예산 (천원)
				소계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등	
총 계		29개 사업		409	298	43	10	58	3,215,160
소계		4개 공동체		9	5	1	0	3	110,641
	자활 공동체	청결나라	민간위탁 (금정구지역 자활 센터)	2	0	1	0	1	33,561
		차사랑세차		2	2	0	0	0	17,180
		한마음농원		2	1	0	0	1	22,800
		해피클린청소		3	2	0	0	1	37,100
소계		23사업		360	273	32	10	45	3,104,519
	시장 진입형	소계(4개 사업)		43	22	2	3	16	509,353
		아우름 유료간병	민간위탁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8	4	0	1	3	95,040
		척척박사 청소		10	6	0	2	2	130,361
		자활도우미		1	0	0	0	1	12,048
		복지업무도우미	구직접시행	24	12	2	0	10	271,904

구분	사업 유형	사업명 (주요사업 내용별)	실시방법	인원(명)					예산 (천원)
				소계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등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소계(12개사업)		125	77	12	7	29	1,349,617
		그린재 활용	민간위탁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7	3	1	0	3	75,986
		행복돌보미간병		20	14	0	3	3	198,007
		장애통합교육보조원		6	3	1	0	2	64,991
		깔끄미이불빨래방		4	4	0	0	0	45,932
		자람터		23	15	0	0	8	253,754
		걸레와 빗자루		15	8	4	0	3	161,117
		꽃드림화훼		8	6	0	1	1	89,716
		한울토탈 하우스		8	5	0	2	1	101,599
		한마음공방		4	2	0	1	1	45,892
		인큐전담(일반)		1	0	0	0	1	25,557
		결식아동도시락배달		구직접시행	6	4	2	0	0
		수목가꾸기사업	20		12	3	0	5	201,080
		금정도서관도우미	3		1	1	0	1	28,662
		근로 유지형		소계(6개사업)		182	164	18	0
문안도우미	구직접시행			9	8	1	0	0	63,378
동환경정비사업				26	21	5	0	0	183,092
옥외광고물정비				8	6	2	0	0	56,336
공동자립장사업				11	11	0	0	0	77,462
복지시설도우미				122	112	10	0	0	819,348
공공시설관리지원				6	6	0	0	0	42,252
디딤돌 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민간위탁 (해운대복지관)	10	10	0	0	0	3,681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동부고용 지원센터	20	10	5	0	5	-
광역 자활	성과관리	희망리본프로젝트	사례 관리 취업연계	20	10	5	0	5	

다. 대상자 참여사업 종류(자활역량평가표에 의거 분류)

자활급여종류	기 준	근로능력 점 수
노동고용부 자활사업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자	70점 이상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로 취·창업 욕구가 높은자	70점 이하
자 활 근 로	시장진입형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인턴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이 가능한 자
근로유지형		
디딤돌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 근로의지가 현저히 낮은 경우 · 상습적인 조건불이행자 등	점수와 무관

3. 저소득 주민 보호

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등 용자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타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을 용자해 주고 있다.

(1)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 용자대상 : 보증금 6,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
 - 20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용자한도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최고3,500만원 이내)
- 용자 신청 시기
 -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 상 전입일중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해당주택 1년 이상 경과,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용자조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이 율 : 연2%
-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 용자 제외자

- 부동산 또는 중형이상 자가용 소유자, 신용불량거래자 등
- 다른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 은행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

○ 2011년 용자추천실적 : 40건 651백만원

(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 용자대상 :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자

○ 자금용도

- 영세상행위 자금, 재난을 당한자의 생계자금, 전세자금, 재학생 학자금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용자한도 : 2천만원 이하

○ 용자조건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이자 : 연3%(거치기간 중 무이자)

○ 보증조건

- 신용대출(1,000만원이하) : 재산세 2만원 이상인 자 1명
- 담보대출(2,000만원이하) :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함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구서동 지점

○ 2011년 용자실적 : 14건 138백만원

(3) 생업 자금

- 용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층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며 재산 1억원 이하인 자
- 용자용도 :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 취급은행 : 국민은행
- 연 이 율 : 연 3%
- 용자기간 : 5년거치(이자만) 5년 균등분할상환(원리금)
- 대출금한도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 보 증 대출 : 2,000만원
 - 담 보 대출 : 담보 범위내(5,000만원 한도 내)
- 대출유형
 - 무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 1인
 - 담보대출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
- 2011년 용자실적 : 4건 65백만원

나. 영구임대·전세임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선정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철거세입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점수를 산정하여 지구별 예비입주자를 관리주체(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기 또는 추가 입주자 선정 요청 시 통보하고 있다.

〈 예비입주자 추천현황(2011년) 〉

사업주체	사업명	추천세대	비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	206	
	매입임대	336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	234	
	매입임대	37	

다.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기금 3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려운 세대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

〈 장학금 지급 실적 〉

(단위 : 천원)

구분	계		지급회수	중학생		고등학생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0년	30명	9,150	1회	15명	3,750	15명	5,400

라.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분야별 전문직 자원 봉사자들로 금정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을 조직·구성하여 2000년부터 운영해온 순회봉사단을 2011년에는 교회에서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밀착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순회봉사단 구성 : 6개분야 약 80명(전문가 40명, 자원봉사자 40명)
 - ▷ 보건·의료분야, 이·미용, 장수사진촬영, 시력검진, 생활상담, 무료급식
- 수혜대상 : 금정구 지역내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300명
- 최초구성일시 : 2000. 6. 11.
- 운영일시 : 상·하반기 각 1회
- 장 소 : 상반기(성일교회), 하반기(동부교회)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운영회수	4회	2회	2회	1회	2회	2회	1회	2회	2회
봉사인원	251명	109명	114명	75명	193명	156명	61명	149명	160명
수혜인원	2,276명	1,311명	1,354명	637명	1,943명	1,062명	820명	1,462명	883명

마. 이웃돕기 성금 모금

○ 모금기간 : 2011. 12. 1. ~ 2012. 1. 31.

○ 희망 2012 이웃돕기 모금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우리구 목표액	실 적 (모 금 액)					목표 대비 (%)	비고
		총 계	성 금			성 품		
			소 계	일 반	지 정			
계	229,370	351,049	283,833	124,216	159,617	67,216	153%	
구	229,370	134,365	134,365	8,953	125,412	-		
동		216,684	149,468	115,263	34,205	67,216		

※ 2011년 모금액 355,706천원

바. 긴급지원제도 실시

(1) 긴급지원제도

기본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2) 지원 대상 :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이혼, 단전 등)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3) 지원요청 또는 신고자

○ 요청자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요청처 : 구청 긴급지원담당(☎519-4786) / 보건복지콜센터(129)

(4) 지원기준

○ 재산 13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00% 또는 150%이하

▷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5)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1회),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 곤란한 경우 의료 지원

(6) 긴급지원 기간 및 내용

○ 단기지원원칙 :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지원기간	1개월	1회	1개월	1개월	1개월
지원금액	1인 373~ 6인 1,383	300만원 이내	2인 334~ 6인 732	1인 462~ 6인 1,714	· 초·중·고생 교육비 · 연료비 : 83(동절기10 ~ 3월) · 해산비·장제비 : 500 · 단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 500

○ 2011년 지원 실적 : 175건(생계19/의료151/주거1/교육2/연료1/장제1)

/ 261,384천원

제4절 의 료 급 여

1. 의료급여 제도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종 별	대 상
1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자로 구성된 세대, ❖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요무형문화재, 이재민 및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구성된 세대

〈 의료급여현황 〉

(2011. 12. 31기준)

동 별	합 계		1종		2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합 계	6,188	9,551	4,912	6,315	1,276	3,236
서1동	486	782	366	473	120	308
서2동	387	632	284	376	103	256
서3동	461	748	342	483	119	265
금사동	345	559	262	342	83	217
부곡1동	580	967	470	674	110	293
부곡2동	273	438	216	282	57	156
부곡3동	246	376	173	214	73	162
부곡4동	354	554	301	408	53	146
장전1동	205	330	146	192	59	138
장전2동	154	201	132	149	22	52
장전3동	275	438	224	287	51	151
남산동	770	1,360	552	776	218	584
구서1동	199	367	143	212	56	155
구서2동	285	482	195	267	90	215
금성동	37	49	33	42	4	7
선두구동	120	156	104	123	16	33
청룡노포동	167	268	125	170	42	98
복지시설및행려자	844	844	844	844	0	0

나. 의료급여의 내용

수급권자의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 재료, 의료급여기관에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는다.

□ 의료급여의 범위에 제외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특진 보조기, 의치, 의한,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제3자의 고의, 과실 행위로 인한 진료
- 자동차 손해보상보험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진료보상이 가능한 경우

〈 의료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조건표 〉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 반	장애인
1차 의료급여	의원	원내직접조제	원내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그 외의 경우	1,000원	1,000원	25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처방조제	무료	무료	무료
			처방조제	무료	무료	무료
	약국	직접조제	직접조제	900원	900원	좌동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무료	
처방조제			500원	500원		
2차 의료급여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그 외의 경우	원내직접조제	1,500원	총진료비의 15%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원내직접조제	2,000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그 외의 경우	원내직접조제	2,000원	총 진료비의 15%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원내직접조제	2,500원		
	입원(제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총 진료비의 10%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 그 이외의 경우 :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원내직접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

제5절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시설입소 유도 및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해 거리나 임시거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 노숙인 쉼터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현원(명)	종사자수	전화번호	비고
금정희망의집	서부로 40(서동)	41/44	7명	526-1033	

나. 부랑인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현원(명)	종사자수	전화번호	비고
사랑의 선교회	동부곡로5번길 134-9(부곡동)	19/11	4명	518-8425	개인운영

다. 시설입소시(노숙인 쉼터) 지원사항

- 안정적인 숙소와 식사제공(1인당 2식, 토·공휴일은 중식포함)
- 일자리 정보를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
- 쉼터에 머물면서 저축을 할 경우 은행금리에 연3% 높은 금리추가 지급
- 쉼터에 계신분들의 독립적인 주거마련을 앞당기기 위해 주거지원
- 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자활프로그램 참여
- 질병치료, 약품 제공 등 의료혜택

라. 노숙인 및 부랑인 지원시설

- 응급잠자리 제공
 - 평일이용시간 : 연중계속 저녁 5시~다음날 아침 7시까지
 - 지원내용 : 잠자리, 긴급급식, 생필품(내의, 수건, 칫솔 등), 샤워·세탁 등
 - 문 의 : 부산노숙인지원센터 ☎ 463-1127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4(전포동)]

○ 무료진료소 운영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야간 18:00~21:00(화, 금요일)
- 진료내용 : 일반내과 등
- 문의 : 사랑그루터기 ☎ 441-5662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4(전포동)]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임시잠자리, 긴급 급식, 생필품(칫솔, 면도기 등),
샤워·세탁·이발, 쉼터연계 및 고충상담 등
- 문의 :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동구 고관로 46(초량동)] ☎463-7707
부산노숙인지원센터[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4(전포동)] ☎463-1127